

---

---

진도문화를 소개하는 서·화창 풍경길 만들기 지역개발  
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
**-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 내용 -**

---

---

2017. 9.

# 목 차

<b>제 1 장 사업의 개요</b> .....	1
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.....	2
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.....	2
1.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.....	3
1.4 사업의 내용 .....	3
<b>제 2 장 대상지역 설정</b> .....	7
2.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설정 .....	8
2.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.....	8
2.3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 .....	10
<b>제 3 장 토지이용구상</b> .....	11
<b>제 4 장 대안의 설정</b> .....	15
4.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.....	16
<b>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</b> .....	18
5.1 환경영향요소 추출 .....	20
5.2 평가항목의 선정 .....	20
<b>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</b> .....	25

# 제 1 장

---

## 사업의 개요

- 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
- 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- 1.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
- 1.4 사업의 내용

## 제 1 장 사업의 개요

### 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- 진도군은 다양한 유·무형자원을 보유하고 있고, 과거 고려시대부터 귀향지(유배지)로 다방면의 학자들이 진도에 거주하면서 서(書)·화(畵)·창(唱)이 자연스럽게 전수·발전되어 온 지역이나, 도서지역의 특성인 고립성으로 인한 관광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이 미흡한 상황임.
- 또한 행복마을권사업의 공공주택사업 대상지가 동외1길(대로), 진도천(지방하천) 등으로 이격되어 기존 마을과 괴리, 거리감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경관을 조성해 연계사업간 시너지와 지역발전을 도모함.
- 유배 역사 스토리텔링(書), 산수화, 남종화 등의 그림(畵), 민요 등의 소리(唱)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가치 제고에 대한 필요성 높음.
- 진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민속문화예술특구의 향토문화회관, 무형문화재전수관, 예술영재교육원, 문화원 등 문화시설 방문객들의 유치를 위한 테마발굴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
- 지역주민 의견조사로 도출한 마을자원을 지역 경관개선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행복마을권 사업 조성 예정
- 진도는 민요 등의 소리, 진도 서화 등 다양한 민속 문화의 성지로서 스토리텔링 등 여러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의 활성화로 지역가치 상승이 예상됨.
- 진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향토문화회관, 무형문화재전수관, 예술영재교육원, 문화원 등 문화시설 방문객들의 유치를 위한 테마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임.
- 지역주민 의견조사로 도출한 마을자원을 지역 경관개선에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행복마을권 사업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도모함.

### 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사업은 『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1조에 따른 “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”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.

<표 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관련규정

법적 실시근거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	2. 개발기본계획 파. 특정지역의 개발 3)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	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
자료) 환경영향평가법, 2017.01, 법제처 인터넷데이터베이스

### 1.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

- 2017. 7. 19 :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
- 2017. 7. 24 :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
- 2017. 9. 4 :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(예정)
- 2017. 9. 5 ~ 6 : 환경질 및 생태조사(예정)
- 2017. 9. : 초안보고서 작성 및 제출(예정)
- 2017. 10. :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·공람 및 주민 등 의견수렴(예정)
- 2017. 11. : 주민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(예정)
- 2017. 11.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(예정)
- 2018. 2. : 용역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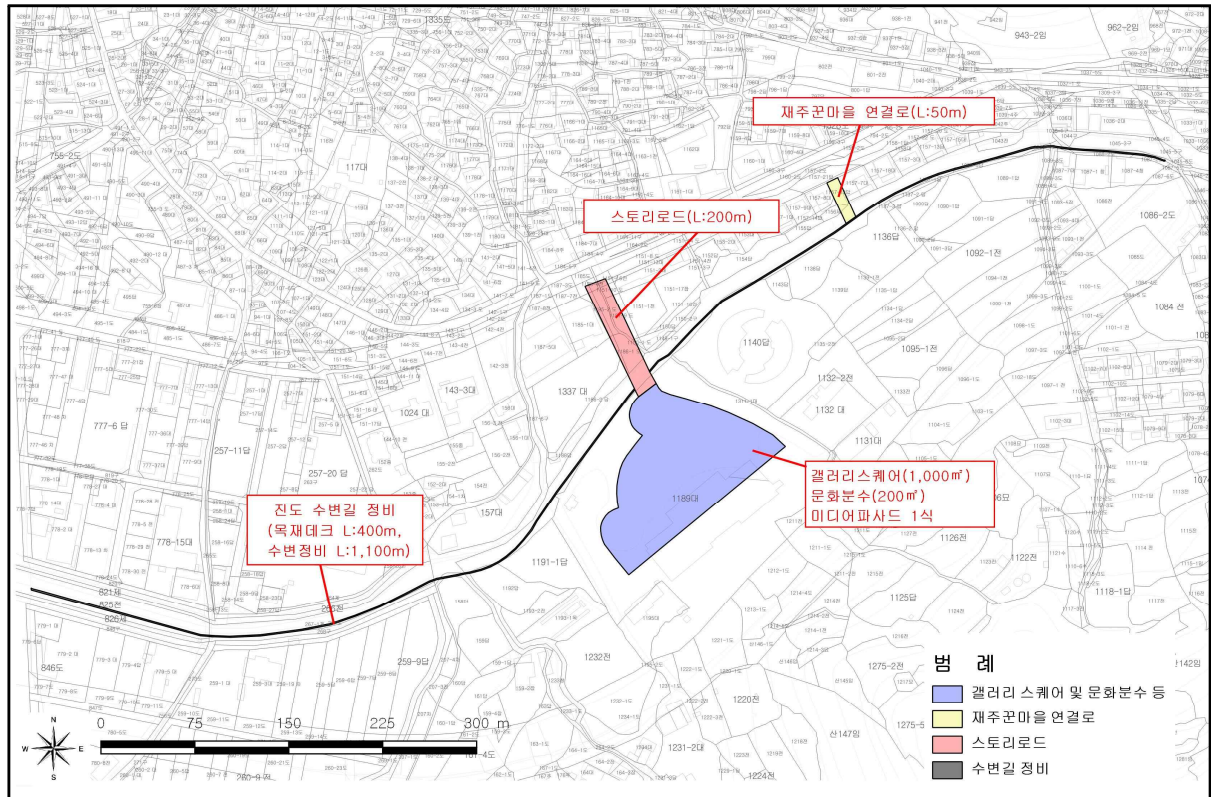
### 1.4 사업의 내용

- 가. 명 칭 : 진도문화를 소개하는 서·화·창 풍경길 만들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
- 나. 위 치 :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89 일원
- 다. 사업자 : 진도군
- 라. 승인기관 : 전라남도
- 마. 편입면적 : 14,325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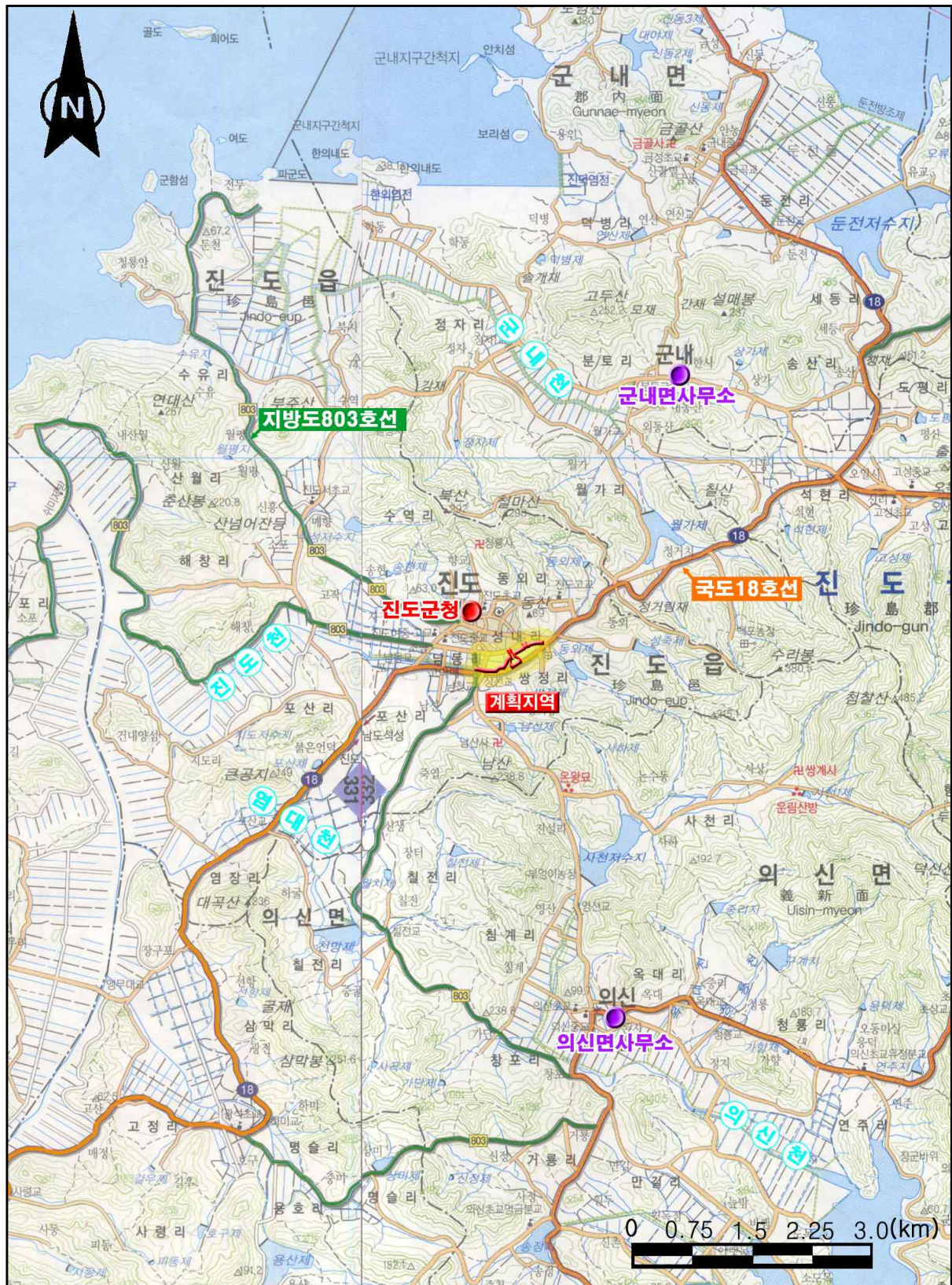
바. 토지이용계획

사업	면적	비율
갤러리스퀘어 및 기타 문화 시설 구역	11,268㎡	78.7%
스토리로드	1,655㎡	11.6%
수변길 정비	1,066㎡	7.4%
재주꾼 마을 연결로	336㎡	2.3%
계	14,325	100.0%

<그림 1-1> 토지이용계획도



<그림 1-2> 계획지역 위치도



<그림 1-3> 계획지역 위성사진



# 제 2 장

---

## 대상지역 설정

- 2.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설정
- 2.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
- 2.3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

##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

### 2.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설정

#### 2.1.1 계획의 특성

- 본 사업특성상 공사시 계획지역 부지조성 및 시설물 조성 등에 의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.

#### 2.1.2 입지적 특성

- 본 계획지역이 위치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89 일원으로, 총 면적은 14,325㎡로 계획함.
- 계획지역은 진도읍 시가지에 위치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. 계획지역 북측은 진도읍 시가지가 위치하고, 남측은 농경지 및 임야가 위치하고 있으며, 가운데로 계획지역과 인접하여 진도천이 분포하고 있음.

#### 2.1.3 환경적 특성

- 공사시 수변길 정비로 인한 진도천 내 육수 동·식물상의 서식지 훼손 및 개체 수 감소와 강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SS농도의 국부적인 증가로 하류 유입수계 수질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.
- 또한,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건설장비가동 및 공사차량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영향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.

### 2.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

- 본 사업은 국지적인 구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계획지역이 위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일원을 입지 현황과 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.

&lt;표 2-1&gt;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

구 분		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	평가대상 지역 범위	
			시간적	공 간 적
자연 환경 의 보전	생물다양 성·서식지 보전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육상동·식물상 및 육수 동·식물상, 주변 자연생 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	공사시	▶ 진도군 및 진도읍 일원 ▶ 중점평가 -육상생태계 : 반경 300m 이내 -육수생태계 : 3지점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▶ 공사시 절·성토 작업에 따른 지형 및 지질 변화 ▶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영향 ▶ 생태축현황 및 사업시행시 영향 ▶ 토양에 미치는 영향	공사시	▶ 진도군 및 진도읍 일원 ▶ 중점평가 : 계획지역 ▶ 환경현황조사 -토양 : 1개 지점
	주변 자연경관 에 미치는 영향	▶ 사업시행으로 계획지역 주변 위 락 및 관광시설에 영향 ▶ 사업시행시 시설물 조성에 따른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변화	공사시 운영시	▶ 진도군 및 진도읍 일원 ▶ 중점평가 : 주변 조망점(근 경·중경·원경)
	수환경의 보전	▶ 공사중 부지정지로 인하여 강우 시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	공사시	▶ 계획지역 및 인근 수계 ▶ 환경현황조사 -하천수질 : 1개 지점
생활환 경의 안전성	대기환경 기준의 부합성	▶ 부지정지 및 공사장비가동에 의 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 출영향	공사시	▶ 중점조사 -부지 반경 300m 이내 ▶ 환경현황조사 : 1개 지점
	소음환경 기준의 부합성	▶ 공사시 장비 투입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·진동 영향	공사시	▶ 중점조사 -부지 반경 300m 이내 ▶ 환경현황조사 : 3개 지점
	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	▶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기 초자료로 이용	공사시	▶ 진도군 및 진도읍 일원 ▶ 중점평가 : 계획지역
	자원·에너 지 순환의 효율성	▶ 공사시 건설폐기물, 폐유, 임목 폐기물,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 의 발생	공사시	▶ 진도군 및 진도읍 일원 ▶ 중점평가 : 계획지역
사회· 경제환 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 적 토지 이용	▶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의 변화 및 영향	공사시	▶ 진도군 및 진도읍 일원 ▶ 중점평가 : 계획지역

## 2.3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

-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예측 및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함.

<표 2-2> 환경영향의 예측기법

검 토 항 목		분석기법	관련자료 및 평가방법
자연환경 의 보전	1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◦ 각종 보호지역, 생태자연도,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, 각종 보호 야생생물 서식공간 조사	◦ 생태자연도 ◦ 관련 기초자료 조사 ◦ 동·식물 현황 자료
	2)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◦ 계획지역을 대상으로 특이지형, 주요 산림축(백두대간, 정맥, 지맥, 기맥 등) 조사를 통한 생태적 연속성 단절 여부 평가	◦ 지형도 및 지질도 ◦ 산경도
	3)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◦ 문헌조사를 통하여 자연환경적·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분포여부 조사	◦ 문헌조사
	4) 수환경의 보전	◦ 수환경 보호지역(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, 수변구역 등) 분포여부 조사	◦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◦ 상수도통계
생활환경 의 안정성	1) 환경기준 부합성	◦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환경기준 달성여부 예측	◦ 환경기준
	2)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◦ 하수종말처리장, 폐기물 처리 시설 등과 같이 환경기초시설 현황제시	◦ 하수도통계 ◦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
	3) 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	◦ 진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(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지정폐기물 등)의 발생현황 및 처리방안 조사	◦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◦ 진도통계연보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1)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◦ 토지이용의 변화	◦ 진도통계연보 ◦ 군관리계획 입안서

# 제 3 장

---

## 토지이용구상

## 제 3 장 토지이용구상

- 본 계획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89 일원에 위치하고 있음.
- 진도문화를 소개하는 “서화창 풍경길” 만들기 사업은 크게 세가지의 사업으로 분류 가능하며, 각각 이야기, 그림, 음악을 주제로 진도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고 있음.

### 3.1 이야기가 있는 “서(書)” 풍경길

- ‘서’ 풍경길 조성은 진도의 특색있는 역사와 문화 스토리를 활용해 사업대상지 주요 진입로와 진도천 수변을 따라 스토리로드 조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.

<표 3-1> 사업내용 요약

구분	세부 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용도	행위제한
• 스토리로드 조성	- 조성길이 200m	120	도로	없음
• 재주곶마을 연결로	- 연결로조성 L=50m	390(지방비)	도로	없음
• 진도문화 풍경발전소	- 주민문화복시설 활용	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	공공시설	없음

	
[민속문화예술특구 주진입로 전경]	[주 진입로 주변 현황]
	
[스토리로드 조성(안)]	[진도문화 풍경발전소(연계)]

### 3.2 그림이 있는 “화(畵)” 풍경길

- ‘화’ 풍경길은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갤러리스퀘어 조성으로 구성됨. 진도는 축제기간 또는 필요시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해 진도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며, 갤러리스퀘어 조성으로 진도의 고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임.

<표 3-3> 사업내용 요약

구분	세부 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용도	행위제한
• 갤러리스퀘어 조성	바닥갤러리 1개소 (조성면적 : 1,000㎡)	80	공공시설	없음
• 미디어파사드 설치	하드웨어시스템구축 및 영상물제작	공공시설	없음	없음
				
[갤러리스퀘어 조성 예정지]		[미디어파사드 조성지(문화회관 전면)]		
				
[갤러리스퀘어(예)]		[미디어파사드(예)]		

### 3.3 소리가 있는 “창(唱)” 풍경길

- ‘창’ 풍경길은 진도천 주위 수변길 및 하천주변길 정비, 진도소리 문화분수 조성 사업으로 구성됨. 특히 민속적인 소리를 활용한 음악분수 설치로 관광자원의 다양화 및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임.
- 진도 수변길 정비 사업 중 목재데크 구간은 진도향토문화회관 앞 400m구간에만 조성되며, 나머지 1,100m 구간은 진도천 주변 산책로 조성을 위한 경관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임.

<표 3-3> 사업내용 요약

구분	세부 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용도	행위제한
• 진도소리(창)문화분수	- 시설물 1개(규모:200㎡)	500	공공시설	없음
• 진도 수변길 정비	- 목재데크 400m - 소리쉼터 1개소(300㎡) - 소리재생 조형물 2개	260	지방하천	없음
	- 하천주변정비 1,100m	230(지방비)	지방하천	없음

	
[음악분수 및 편의시설 설치 예정지]	[진도천 수변길 정비 예정지]
	
[음악분수 조성(예)]	[목재데크 설치구간]

# 제 4 장

---

## 대안의 설정

### 4.1 대안의 종류 및 선정

## 제 4 장 대안의 설정

### 4.1 대안의 종류 및 선정

#### 가. 대안의 종류

- 대안의 종류는 『환경부고시 제2015-141호』(2015.08.21, 환경부) 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” 【별표 2】에 의거하여 “계획비교, 수단·방법, 수요·공급, 입지, 시기·순서” 등의 측면에서 선정할 수 있음.
-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, 대안의 종류 중 계획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“계획 비교” 측면에서 대안 설정·검토를 실시함.

<표 4-1>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
종류	선정 방법
계획비교	▶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
수단·방법	▶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
수요·공급	▶ 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
입 지	▶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
시기·순서	▶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
기 타	▶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

#### 나. 대안의 선정

- 대안비교결과, 토지의 활용성을 고려한 경제적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 등을 절충하여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한 대안 2를 계획안으로 제시함

<표 4-2> 대안의 비교 및 선정

평가영역		대안1(계획 미수립시, No Action)	대안2(계획 수립시, Action)
		토지이용 측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율성 저하</li> <li>▶ 도서지역의 특성인 고립성으로 인한 관광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이 미흡</li> </ul>
환경 적 측 면	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	▶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	▶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
	생태계 훼손가능성	▶ 생태계변화 없음	▶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
	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	▶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	▶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변화가 예상
	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▶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	▶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상의 변화가 예상
	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	▶ 하천수질의 변화는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사시 부유토사의 발생으로 하천수질환경에 영향이 예상</li> <li>▶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에 영향이 예상</li> <li>▶ 공사시 장비 및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소음·진동영향, 폐기물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</li> </ul>
사회·경제적 측면		▶ 사회·경제적인 변화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</li> <li>▶ 지역문화컨텐츠의 활성화로 지역가치 상승</li> </ul>
선정안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, 향후 공사시에 일시적인 환경 영향이 예상되나, 세부 항목별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</li> <li>▶ 또한, 사회·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,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대안(대안2)을 금회 채택안을 선정</li> </ul>	

# 제 5 장

---

##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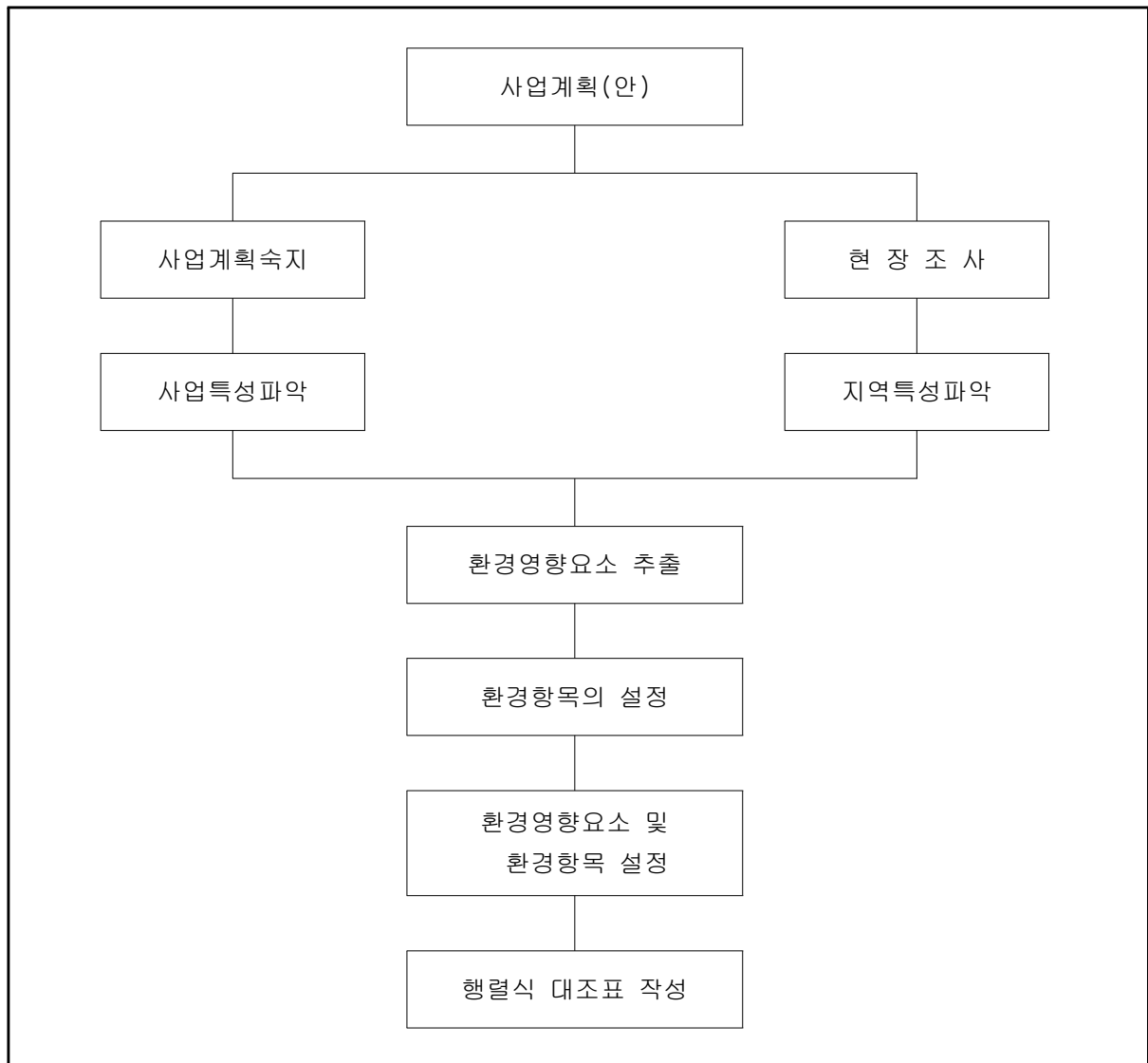
5.1 환경영향요소 추출

5.2 평가항목의 선정

##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□ 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고, 추출된 환경영향요소를 평가항목과 비교·평가하여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함. 설정된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 상호간의 크기 및 중요도에 대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 다음,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대조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함.

<그림 5-1> 평가항목의 설정 과정



### 5.1 환경영향요소 추출

- 환경영향요소란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환경상의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원인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생태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쾌적성, 사회·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.
- 환경영향요소는 당해 사업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환경현황을 파악한 다음, 사업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영향권을 포함하여 장·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하였음.

<표 5.1-1> 환경영향요소의 추출

구 분	환경영향요인	환경영향요소
공사시	부지조성	▶산림벌채, 절·성토, 지반개량, 공사장비 투입
	시설물 설치	▶기초공사, 건축물공사, 부대시설공사, 포장공사, 녹지 조성
	인부 및 장비 투입	▶인력투입, 건설장비 투입, 오수발생, 폐기물발생
운영시	시설물 운영	▶유동인구 증가, 교통량 증가, 대기오염물질 발생, 생활오수 발생, 폐기물 발생

### 5.2 평가항목의 선정

- 사업계획, 지역특성 및 상기에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부고시 제2016-22호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2016.1.21, 환경부」, 「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, 2015.12, 환경부」에 제시된 주요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.

<표 5.2-1> 평가항목의 선정

구 분	자연환경의 보전				생활환경의 안정성		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
	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주변 자연경관과의 영향	수환경의 보전	환경기준 부합성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
중점 평가항목	동·식물상,	지형·지질	경관	수질	대기질, 소음·진동	친환경적자원순환	토지이용
일반 평가항목	-	토양	-	-	기상	-	-

가. 평가항목의 선정사유

- 본 사업시행시 현황조사, 영향예측 및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중점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【별표 1】에서 정하고 있는 ‘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’ 중 계획지역 입지 및 특성을 검토후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<표 5.2-2>와 같이 설정하였음.
- 중점검토항목은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·식물상, 지형·지질, 경관, 수질, 대기질, 소음·진동, 친환경적자원순환, 토지이용 총 8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음.

<표 5.2-2> 중점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평가사항

구 분		선 정 사 유	평 가 사 항
자연 환경의 보전	동·식물상	▶ 사업시행에 따른 식물상,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	▶ 사업시행 전·후의 동·식물상의 변화 예측 및 대책 수립 ▶ 동·식물서식지 차단 또는 훼손여부 및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책 ▶ 식생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
	지형·지질	▶ 부지정지에 의한 지형의 변화 ▶ 토공계획의 적정성	▶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▶ 사면안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 ▶ 토공량 예측 및 이동계획 검토
	경 관	▶ 위락시설의 영향 ▶ 경관상의 변화	▶ 주변 위락시설과의 영향검토 ▶ 주요 조망점에서 계획지역의 경관 변화 여부 파악 및 저감방안 수립
	수 질	▶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▶ 부지 조성에 따른 하천의 수질 영향 예측 ▶ 운영시 오·폐수 발생	▶ 토사유출량 산정 및 대책수립 ▶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와 인근하천에 미치는 영향검토 ▶ 오·폐수 방류에 따른 수용하천의 수질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수립
생활 환경의 안정성	대 기 질	▶ 공사시 토량이동 및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오염발생	▶ 공사시 대기오염 영향인자별 배출량 산정 ▶ 공사시 대기질 예측모델링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확산분석 ▶ 대기질 보전을 위한 저감방안 수립
	소음·진동	▶ 공사시 건설장비 및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영향	▶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 및 공사차량 이동 등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대책수립

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<표 5.2-2> 중점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평가사항(계속)

구 분		선 정 사 유	평 가 사 항
생활 환경의 안정성	친환경적 자원순환	▶ 공사시 및 운영시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발생	▶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수립
사회· 경제환 경과의 조화성	토지이용	▶ 평가의 기본 요소 ▶ 사업시행전·후의 토지이용변화	▶ 사업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▶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 및 친환경적 인 토지이용계획 수립

나. 일반현황조사 항목 및 제외항목의 선정

□ 중점평가 이외의 항목 중 본 사업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이 경미하거나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일반 현황조사항목(기상, 토양)과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당사항이 없는 제외 항목(자연환경자산, 악취, 온실가스, 해양환경, 수리·수문, 위생·보건, 전파장해, 일조장해, 인구·주거, 산업)로 구분함.

<표 5.2-3> 일반현황조사 항목 및 제외 항목

평가항목		선 정 사 유	평 가 사 항
일반 현황 조사 항목	기 상	▶ 평가서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	▶ 진도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조사(2006년 ~ 2015년)
	토 양	▶ 공사시 지장물철거, 폐유 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▶ 운영시 시설물 관리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	▶ 계획지역 내 토양현황 파악 ▶ 공사시 폐기물 및 폐유 처리대책 수립 ▶ 운영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
제외 항목	자연환경 자산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.	-
	악 취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.	-
	온실가스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.	-
	해양환경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.	-
	수리·수문 위생보건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.	-

<표 5.2-3> 일반현황조사 항목 및 제외 항목

평가항목		선 정 사 유	평 가 사 항
제외 항목	전파장해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.	-
	일조장해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.	-
	인구·주거, 산업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.	-

**다. 현황조사계획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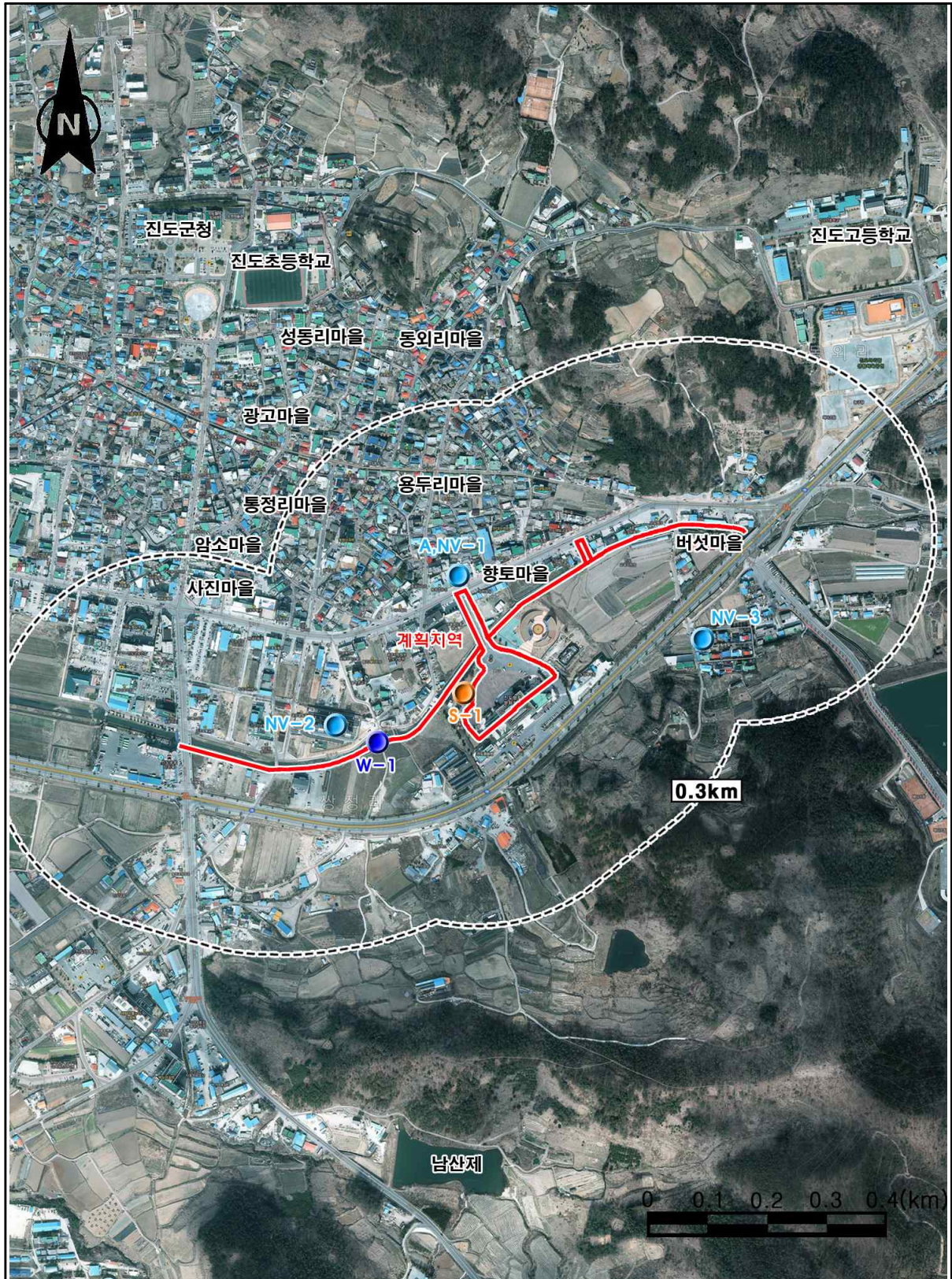
□ 본 사업시행을 위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계획은 다음 <표 5.2-4>와 같음.

-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되,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계획임.

<표 5.2-4> 환경질 및 동·식물상 현황조사계획

구 분	조사지점	조사항목	조사범위	조사방법
대 기 질	1개 지점	▶ 8개 항목 PM-10, PM-2.5, SO <sub>2</sub> , NO <sub>2</sub> , CO, O <sub>3</sub> , Pb, 벤젠	계획지역 반경 300m 이내	대기오염공정시 험기준에 의거
지표수질	1개 지점	▶ 18개 항목 pH, BOD, COD, TOC, SS, DO, 대장 균군, T-N, T-P, Cd, Pb, As, CN, Hg, Cr <sup>6+</sup> , 유기인, 벤젠, 수온	주변 하류 수계	수질오염공정시 험기준에 의거
동·식물상	-	▶ 육상 및 육수 동·식물상 ▶ 법적보호종 서식 현황	계획지역 반경 300m 이내	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병행
토 양	1개 지점	▶ 16개 항목 Cd, Cu, As, Hg, Pb, Cr <sup>6+</sup> , Zn, Ni, F, 유기인, CN, 페놀류, TPH, TCE, PCE, BTEX	계획지역 내	토양오염공정시 험기준에 의거
소음·진동	3개 지점	▶ 4개 항목 주·야간소음도, 주·야간 진동도	계획지역 반경 300m 이내	소음·진동공정시 험기준에 의거

<그림 5.2-1> 측정지점위치도



# 제 6 장

---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

##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

- 본 “진도문화를 소개하는 서·화·창 풍경길 만들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” 과 같이 행정 계획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『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』에 의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야 함.
- 그러나, 본 계획지역의 경우 편입면적(14,325㎡)이 60,000㎡ 미만이므로,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은 실시하지 않았음.

<표 6-1>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

환경영향평가법	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<p>제8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)</p> <p>① 환경부장관, 계획 수립기관의 장,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(이하 "승인기관의 장"이라 한다)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</p> <p>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이 장에서 "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"이라 한다)을 결정하여야 한다. <b>다만,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(이하 "개발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사업계획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</li> <li>2. 토지이용구상안</li> <li>3. 대안</li> <li>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</li> </ol>	<p>제8조(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)</p> <p><b>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.</b></p>

자료) 환경영향평가법, 2017.01, 법제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